

「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」 주요 연구조사 결과

1. 경영·노동 분야

- 경영·노동 분야에서는 ‘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’, ‘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’, ‘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’, ‘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’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.

<주기적 지정감사제* 폐지>

* 주기적 지정감사제 : 기업이 외부감사인(회계법인)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

- (문제점)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국가에서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료를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, 신규 지정감사인에게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데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되었다.

⇒ (개선방안) 주기적 지정감사 제도를 폐지하고,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자율규범을 활용할 필요

<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* 축소>

*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는 특수관계인 개념에 기초,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

- (문제점)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친족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으며, 이를 기준으로 주식소유 현황 및 변동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.

⇒ (개선방안) 특수관계인 가운데 친족의 범위를 (1안) 동일인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또는 (2안) 4촌 이내의 혈족, 인척 중에서 '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자'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

<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>

- (문제점)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기업들은 고용부 예규에 따라 통상임금을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일시적 인건비 소급 부담을 겪고 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기업들의 고용부 예규를 준수한 관행, 노사합의 등 선의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 판결에 따른 사후적인 사법적 해석의 변경만을 기초로 소급된 임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청구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.

⇒ (개선방안)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를 준수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임금을 소급 지급하게 될 경우,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소급 청구 예외사유로 명시 및 관련 공단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

<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>

- (문제점) 현행 규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감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노동위원회는 휴업수당 감액 결정에 있어 노사합의 등 규정에도 없는 조건을 요구해 휴업수당 감액 결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.

⇒ (개선방안) 경영지표 등 계량적 지표를 반영한 휴업수당 감액 관련 판정 기준 명확화 및 감면심사 진행 신속화

2. 안전보건·환경 분야

- 안전보건·환경 분야에서는 ‘추락위험 높이 기준(2m 이상) 명확화’, ‘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’ 등 39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.

<추락위험 높이 기준(2m 이상) 명확화>

- (문제점) 사업주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할 추락위험 높이 기준이 없어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등 논란을 야기하고, 기업 입장에서 추락위험 요인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.

⇒ (개선방안)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할 ‘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’를 ‘높이 2m 이상’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

<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* 중복규제 개선>

* 대기환경보전법, 통합환경법 : 대기오염물질 '배출농도' 규제

대기관리권역법 : 대기오염물질 '배출총량' 규제

- (문제점) 대기환경보전법 및 통합환경법상 대기오염물질 '배출농도'를 관리 중인 상황에서 대기관리권역법상 '배출총량'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,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인·허가 시 통합환경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이중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.

⇒ (개선방안)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통합환경법(농도) 적용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법(총량) 적용 제외, 시설 인·허가 절차 통합

3. 신산업 분야

- 신산업 분야에서는 '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', '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·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' 등 29건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.

<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>

- (문제점) 건설로봇은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 조작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이 없어 건설로봇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⇒ (개선방안) 건설로봇 원격조작 면허 또는 교육이수증 발급제도를 마련해 비숙련자의 건설로봇 조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건설로봇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

<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·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>

- (문제점)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음용 가능한 물 또는 에센스를 첨가하여 쓰는 분말·건식 형태의 고체형상(동결건조 등) 화장품은 '화장품'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국내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.

⇒ (개선방안) 혼합하는 액체의 종류를 포장 등에 명시하여 판매할 경우 분말·건식 화장품도 '화장품'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필요